

제 210회 임시회  
광진구의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직피해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9. 1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78
----------	------

2017.9.14.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7.8.23.
- 나. 회부일자 : 2017.9.1.
- 다. 상정일자 : 2017.9.6.

## 2. 제안설명

가. 제안설명자 : 고재식 행정국장

나. 제정이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 법령 등에 따른 구조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범죄피해 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광진구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법인에 재정지원 근거 명시 (안 제5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업무관계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규정 (안 제7조)

##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제33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2017. 7. 28. ~ 8. 17.(결과 : 의견 없음)

##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정수용)

-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23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005. 12. 23일에 제정되었으나 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진 않았으며, 최근 들어 점차 잔인해지고 범행동기조차 없는 범죄들로 인해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늘어나고 2014. 12. 30일자로 「범죄피해자 보호법」도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제정내용은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구민들의 문제인식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협력의무를 명시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으로써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에 대한 협조의무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호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함.
- 안 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업무 관계자에 대한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음.

## ○ 종합 검토의견

-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추진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면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로 법무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등록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사회복귀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병원치료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 5. 토론

- 회의록 참조

##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